

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 . 2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1999.10. .
- 다. 상정일자 : 1999.10.18. 제7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동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취득재산
 - 향토메밀자료관 - 효석기념관 건립부지 및 진입도로 : 봉평면 창동리 산 176-3번지의 7필지 27,452m² 토지
 - 오지개발사업인 봉평면 노인복지회관 1동 : 355m² 건물
- 나. 취득취소 : 농산물 판매장 부지 (횡계리 355-41번지 207m²)
- 다. 처분취소 : 구농촌지도소 북부지소(횡계리 324-1번지 대지 739m²)

4. 검 토 의 견

■ 종합검토결과

-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의 취득재산은 향토메밀자료관-효석기념관 건립부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창동리 산 176-3번지의 7필지 27,452㎡와 오지개발사업인 봉평면 노인복지회관 건물(철근) 355㎡임. 이중 노인복지회관은 건축중에 있어 다소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.
- 취득 및 처분을 취소코자 하는 것은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농산물판매장 부지조성 목적인 황계리 335-41번지 207㎡는 감정가격(평당 1,820천원)이 매입요구액(평당 3,000천원)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소유자(주)의종개발이 매각을 거부하여 취득을 취소코자 하는 것이며,
- 판매장 부지 대체 재산조성을 위하여 처분을 계획하였던 구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부지와 건물은 농산물 판매장 부지 취득 취소와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처분에서 제외코자 하는 것임.